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6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황운하·이해민·김기표

조 국・김준형・이병진

윤준병 • 이재관 • 서왕진

소병훈 · 김선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 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,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 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가 취업, 진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지역인재의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	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
	역인재가 취업, 진학 등을 위하
	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
	지역인재의 「취업 후 학자금
	<u>상환 특별법」에 따른 학자금</u>
	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
	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
	있다.